



## ※ 가입자 유의사항

1. (이용약관) 한국증권전산 공인인증센터(이하 SignKorea라 한다)는 전자서명검증키(이하 검증키라 한다)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SignKorea의 가입자 이용약관을 적용하며 이용약관은 별도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 SignKorea는 인증서의 발급, 이용, 갱신, 재발급, 정지, 회복, 폐지, 정보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입신청자 혹은 가입신청법인(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신원확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인증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서명 혹은 날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합니다.
3. (고유이름의 생성) SignKorea는 SignKorea에서 정하는 식별명 정책을 적용하여 유일한 식별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특정상표의 사용) SignKorea는 기관 및 개인이 특허청 또는 국제적으로 이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 상표권 등을 획득한 경우, 등록시 당해 특정상표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5. (처리기간) SignKorea는 인증서 신청서를 받는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6. (참조번호/인가코드 관리) 가입자가 수령한 인증서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는 가입자별로 고유하게 부여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인증서 발급 전에 분실할 경우 안전한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전에 참조번호/인가코드를 분실할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해당 대행등록기관(참조번호/인가코드를 수령한 곳) 또는 SignKorea에 분실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생성키의 생성 및 보관) 생성키의 생성 및 보관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며, 생성키가 노출·분실되는 경우에 가입자는 지체없이 해당 대행등록기관 또는 SignKorea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의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8. (인증서 발급정보 보관)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정보가 훼손되거나 인증서 발급정보를 보관하는 장치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가입자는 자신의 인증서 발급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9. (효력정지 및 폐지) SignKorea는 전자서명법 제18조 1항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의 효력정지 또는 폐지 신청을 받거나 혹은 임의로 인증서를 효력정지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10. (환불) SignKorea는 가입자가 참조번호/인가코드를 이용하여 인증서 발급을 받기 전에 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비용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 6 호 “환불요청서” 참조)
11. (손해배상) SignKorea는 어떠한 경우에도, SignKorea에서 발급한 인증서 가입자 및 그 인증서를 신뢰하는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인증서와 관련된 모든 거래, 문서교환, 암호화, 전자서명 등에 관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SignKorea에서 정한 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12. (가입자의 신고의무) 가입자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고 발생 시, 신고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